

교습비 등 반환기준(제18조 제3항 관련)

구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
1.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유에 해당하는 경우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	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 (이미 남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남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 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	
2. 제18조 제2항 제1호의 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학원설립·운영 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	남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 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	
3.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1) 독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2) 학원, 교습소 소 사 용기간 이 1개 월 이 내 인 경우 3) 인과 외 교습자 의 경우	이미 남부한 교 습비등의 전액 부터 총 교습 시간의 1/3 정 과 전까지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 터 1/2 경과 전까지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교습 시작 전 혹은 학습장소 사용 전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교습 시작 후 반환 대상 교습 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 월 이내인 경우 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 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2) 독서 의 사용을 경우	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	학습장소 사용 금액 × 교습 장소 제공 금액 - (법 제15조 제3항 전	단에 따라 계시 된 1일 교습비 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 터 학습장소 사 용을 포기한 날 의 전날까지의 일수)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	---